

# 고 시

## 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2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(안양석수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131호(2020.12.24)로 승인 고시된 안양석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01월 26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안양석수 공공주택 건설사업(행복주택)
2. 사업시행자
  -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(한국토지주택공사) 사장 이한준, (안양시) 시장 최대호
 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  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(관양동)
3. 사업개요
  - 대 지 위 치 :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59-30번지
  - 사 업 면 적 : 1,263.30㎡
  - 대 지 면 적 : 1,263.30㎡
  - 연 면 적 : 4,107.68㎡
  - 사 업 규 모 : 아파트 1개동(행복주택 30세대, 6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  -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(행복주택)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
 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(사업폐지)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